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02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한민수・박 정・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,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행정기본법」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

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28조).

법률 제 호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 중 "20일"을 "30일"로, "15일"을 "25일"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"20일"을 "30일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이의신청) ① (생 략)	제28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	2
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	
터 <u>20일</u> 이내 또는 그 행위가	<u>30일</u>
있음을 안 날부터 <u>15일</u> 이내에	<u>25일</u>
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	
야 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	4
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	
부터 <u>20일</u> 이내에 제29조에 따	<u>30일</u>
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	
조정(調停)을 위한 재심(再審)	
을 청구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
	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
	사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
	(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)에 따
	른다.